

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보조사업자(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재공고)

2026년도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수산업 분야 소규모 창업·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컨설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 사업목적 : 여성어업인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 모집대상 : 여성어업인의 창업준비교육·컨설팅·판로개척 지원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 및 단체 1개소
- 수행업무 : 여성어업인의 창업 준비교육·창업컨설팅·판로개척 지원
- 사업규모 :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100%)

□ 사업자 공모

- 공고 및 접수기간 : '26. 6. 26.(금) ~ 7. 6.(월) 17:00 (11일간)
- 공 고 처 : e나라도움(보조금 시스템) 및
수협중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입찰공고)”
- 지원자격 : 인력육성을 위한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아래 '신청서류' 제출 시 공모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①참가신청서(붙임1), ②기관·단체소개서(붙임2), ③세부사업계획서(붙임3),
④신용평가등급확인서(붙임4 설명 참조), ⑤정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⑦직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⑧법인등기부등본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이메일(honorguard7@suhyup.co.kr,
kyj83@suhyup.co.kr) 제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12월

○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어업인* 및 어업법인** 5개소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여성어업인이 대표이거나 여성어업인의 조합원 또는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의 수산업 분야 소규모 창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창업준비교육 → 창업컨설팅 → 판로개척) 맞춤형 지원

(1단계) 창업지원교육

- ①사전인터뷰(경영실태, 여건분석 등)
- ②조직관리교육(회계, 세무, 노무 등 창업기본)
- ③상품관리교육(지역 특산물 선정, 시장분석, 차별화 전략 등)
- ④마케팅 관리교육(디지털 마케팅지원(sns, 스마트스토어 등))

(2단계) 창업컨설팅

- ①사전인터뷰(경영진단(내부), 시장진단(외부))
- ②상품화 컨설팅(발굴 자원 차별화 전략수립, 상품화 방향 수립 등)
- ③마케팅 컨설팅(온라인, 오프라인 등 판로채널 검토(실행 방안 모색))

(3단계) 판로개척

- ①판로개척(온라인,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②홍보 마케팅(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백만원)
계		200
▪ 교육비	○ 5개소×개소당 최대 4백만원	20
▪ 컨설팅비	○ 5개소×개소당 최대 25백만원	125
▪ 판로개척비	○ 5개소×개소당 최대 10백만원	50
▪ 운영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홍보비, 출장비 등	5

※ 개소당 39백만원 한도내 지원(단계별 차등 지원)

※ 단계별(교육·컨설팅·판로개척) 지원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 승인을 통해 필요시 사업여건·수요 등에 따라 일부 단계에 대해서도 지원하거나, 단계별 예산 등 변경 가능

□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 제출서류 평가 및 제안설명회 평가를 통해 적격사업자 선정
- 제안설명회 : 사업자가 10분 이내로 PPT자료를 기반으로 기관 및 사업 소개
(’26. 7. 8.(수). 14시 시행 예정)
- 결과발표 : ’26. 7월 중(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평가위원회(5인 이상) 구성 : 외부위원은 2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사업수행역량평가(35점) 및 사업내용평가(65점)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심사 세부기준은 붙임4 참고)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합 계	-	100
사업수행 역량평가	▪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기관역량, 기업 건실도, 유사사업 수행실적, 홍보방안 및 채널확보 여부, 유관기관 수행실적 여부	35
사업내용 평가	▪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사후관리 계획 및 지속가능성	65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며 익년도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02-2240-3338, 3335)

2026. 6.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 1.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기관·단체 소개서 1부
3. 세부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어업인 창업 컨설팅 수행 사업자 선정 심사표 1부. 끝.

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 참가 신청서

사업명		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 스	
	e-mail		휴대 폰	
해양수산부에서 모집하는 「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목적 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6. . . 신청자 성명 : (인)(또는 서명)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기관·단체 소개서

주 소 및 연락처	○ 주소 :	
	○ 담당자 : ○ 전화 :	○ E-mail : ○ FAX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	
단 체 주요사업	○ ○	
조직 및 인력현황	○ 대표자 : ○ 직원수 : ○ 임원현황 - 상 근 : 명 - 비상근 : 명	
사업자 자산 및 부채	○ 자산총계 : 원(2025년 월 일 기준) ○ 부채총계 : 원(2025년 월 일 기준)	
2025년 주요사업	○ -	

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6. 00. 00 *[제출일]*

000 *[기관명]*



목 차



I. 사업수행역량	9
1. 전문인력 확보	9
2. 사업 추진실적	10
3. 유사사업 수행 실적	10
4. 홍보방안 및 채널 확보 정도	10
II. 사업내용	11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11
2. 성과목표	11
3. 세부 사업계획	12
4. 홍보계획	12
5. 사후관리 방안	12

I. 사업수행역량

1 전문인력 확보

☐ 조직구성도

(작성요령) 기관 전체 조직현황을 이미지 또는 표(모식도)로 작성

☐ 지원분야 조직구성

분야별	직위	성명	주요경력

☐ 기타 지원인력 현황

2 사업 추진실적

☐ 공공기관 등 수주 실적 (최근 5년간)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명	추진기관	담당자	사업예산

3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례

○

☐ 관계기관 MOU체결 여부

○

4 홍보방안 및 채널 확보 정도

☐ 자체 보유 홍보시설(또는 채널) 등

○

☐ 협업가능 홍보시설(또는 채널) 등

○

Ⅱ.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

☐ 추진방향

○

○

2 성과 목표

☐ 추진 목표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 측정시 유의사항)
① 성과지표명(공통)			측정 산식	통계청 자료 등
② 성과지표명(공통)				

(작성요령) 정량(수치)적으로 지표를 달성, 객관적 설정근거·출처 명시

3 세부 사업계획

☐ 추진방법 및 절차

☐ 추진일정

○

(작성요령) 시기별 표를 사용하여 작성

☐ 소요예산

○

(작성요령) 소요예산 표를 사용하여 작성

4 홍보계획

☐ 홍보방안

○

5 사후관리 방안

☐ 중장기 추진계획

☐ 사업성과 활용 방안

붙임4

여성어업인 창업 컨설팅 수행 사업자 선정 심사표

(2026. .)

■ 사 업 명 : 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

■ 기 관 명 :

■ 심사위원 : (인)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고
사업수행 역량평가 (35)	관련분야 전문성 보유	-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	8	비계량 지표
	기업 건설도	기업신용평가등급	5	계량 지표
	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21~'25년) 이내 공공기관 등 수주 실적 총 합계액	7	
	홍보방안 및 채널 확보 여부	-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가능시설 또는 협업가능 시설 보유 - 협업가능 홍보 채널 보유	10	비계량 지표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례 - 관계기관 MOU 체결 여부 등	5	
사업내용 평가 (65)	사업내용(계획)	-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 - 사업계획의 차별성(실효성)	35	비계량 지표
	사업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현실성 및 도전성	10	
	수립예산의 적절성	- 수립예산의 적정성 - 예산절감 노력 정도	10	
	추진계획의 체계성	- 사업추진 시기·일정의 계획성 - 보유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10	
합 계			100	

< (1)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4
B+, B0, B-	3
CCC+ 이하	2

※ 평가기준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에는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

최근 5년 이내 수주실적 총 합계액	평가점수
30억원 이상	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